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206321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정두성

변론 종결 2019. 4. 10.

판결 선고 2019. 5. 29.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56836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478,5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478,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원고와 체결한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무렵 D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때에 A(C의 대표이사였다)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대출금	대출은행	보증원금(변경)	보증기한(연장)
1	2008. 8. 14.	4억 원	D은행	3억 4,000만 원 (2억 7,200만 원)	2009. 8. 14. (2017. 8. 4.)
2	2009. 9. 11.	5억 원	중소기업은행	4억 7,500만 원 (4억 2,500만 원)	2010. 9. 10. (2017. 8. 4.)
3	2016. 4. 29.	2억 5,000만 원	한국산업은행	2억 3,750만 원	2017. 4. 28. (2017. 6. 29.)
4	2016. 4. 29.	6억 원	한국산업은행	5억 1,000만 원	2017. 4. 28. (2017. 6. 29.)

나. 원고는 2017. 8. 8. D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2017. 7.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금 연체를 이유로, 2017. 6. 30.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C에 대한 보증사고통지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7. 8. 25. D은행에 이 사건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45,775,020원을, 2017. 8. 16.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427,393,506원을, 2017. 8. 29. 한국산업은행에 이 사건 ③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39,027,678원 및 이 사건 ④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513,369,493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합계

1,425,565,697원).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은 '본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0.5%를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253,360원이고, 이 사건 ②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230,540원이며, 이 사건 ③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780,820원이고, 이 사건 ④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1,760,540원이다(합계3,025,260원).

라.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223,02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최초 대위변제일인 2017. 8. 16.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마. 한편, A는 2017. 1. 2. 피고(A의 처이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7. 1.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접수 제1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바. 제1심 법원은 2018. 10. 25.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1,429,813,977원(= 각 대위변제금 합계 1,425,565,697원 + 각 추가보증료 합계 3,025,260원 + 법적절차비용 1,223,020원) 및 그 중 이 사건 ②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427,393,50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8. 16.부터, 이 사건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45,775,02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8. 25.부터, 이 사건 3, ④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합계 752,397,171원(= 239,027,678원 + 513,369,49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8. 29.부터 각 A가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2017. 11.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인 C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대출받은 D은행, 중소기업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오다가 2016. 6.경 이후의 자금 사정 악화로 2017. 5. 30.부터 D은행 등에 대한 원금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각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각 대출원리금을 순차 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기에 이른 점, C는 2016. 6.경 무렵 위 각 은행대출금을 포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금융기관 대출채무만 77억 2,500만 원에 이르렀다), 2016. 5. 26.경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846,520원에 대하여 '사업상 일시적유동성 악화로 인한 자금경색'을 이유로 '2016. 5. 31.부터 2016. 12. 31.까지(7개월)'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기도 한 점, C가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2016년 12월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3.경까지합계 74,744,540원을 연체하였고, 2017. 3.경 지방세 4,220,670원을 체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1. 2.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실제로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8. 8. 14., 2009. 9. 11. 및 2016. 4. 29. 이미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2016. 6.경 이후 위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위 C가 2017. 6. 30.경부터 위 각 은행대출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8. 16.부터 위 각 은행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함으로써 위와 같은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가 E에게 C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표이사를 사임할 2016. 6. 무렵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7. 1. 2.경에는 재무제표상 C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고, 위 은행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보증사고의 발생은 위 각 시점 이후에 후임 대표이사 E의 횡령 등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C의 실제 자금상황, 은행대출금 등 연체 상황, 분식회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을가 제10 내지 13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갑 제9,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18. 1. 26.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1. 2. 무렵, A는 시가 5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및 시가 2억 8,500만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G 제12층H호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A가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대출채무만 77억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대출채무, 보증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등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위 적극재산을 넘어서서, 위 증여계약 체결 무렵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증여계약 체결 무렵 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가 C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6. 6. 무렵에는 C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위 은행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은 후임 대표이사의 횡령 등에 기한 것으로 A의 책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이로써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A가 C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6. 6. 무렵 C는 은행대출금을 포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2016. 5. 26. A가 작성·제출한 부가가치세 징세유예 신청서에는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846,520원에 대하여 '사업상 일시적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자금경색'을 이유로 '2016. 5. 31.부터 2016. 12. 31.까지(7개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고 있었던 점, C가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2016년 12월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3.경까지 합계 74,744,540원을 연체하였고, 2017. 3.경 지방세 4,220,670원을 체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가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27.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6.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D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6. 20. 말소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I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D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A와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그 매도가액인 5억 8,000만 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제1심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18. 1. 26.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말소된 D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억 143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액인 4억 7,857만 원(= 5억 8,000만 원 - 1억 143만 원)에 한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4억 7,857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4억 7,85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정총령, 판사 민달기